

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11. 28.

기획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- 제출자: 달서구청장(기획전략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(수)
- 회부일자: 2024. 11. 6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
기획재경위원회(2024. 11. 28.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(2023. 7. 10. 시행)됨에 따라,
- 상위법령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·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(안 제명)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(안 제3조)
 - 포럼, 세미나, 워크숍 등의 개최 및 지원
 -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 등의 추진 및 지원
 -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·공공기관 등의 유치
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 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안 제3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6조)
 -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
 - 당연직 위원 구성, 위원의 임기·연임에 관한 사항
 - ※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67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제외
- 회의 소집·통지, 간사 등에 관한 사항, 운영세칙(안 제7조~제8조)

4. 참고사항(관계법령 등)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○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○ 비용추계서: 비대상

○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○ 성별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○ 입법예고(2024. 10. 2.~10. 22.) 결과: 의견 없음

○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○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과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을 통합한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시행(2023. 7. 10.)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